중개회사 선정·배분 및
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

칸서스자산운용주식회사
CONSUS ASSET MANAGEMENT CO., LTD.

중개회사 선정·배분 및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

제정 2011. 12. 27.
개정 2014. 04. 07.
개정 2015. 02. 12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자본시장법'이라 한다), 금융위원회의 「금융투자업규정」 및 한국금융투자협회(이하 '협회'라 한다)의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회사가 운용·매매체결업무와 관련하여 중개회사 등의 선정·배분 및 조사분석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반업무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"중개회사"란 자본시장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.
② "조사분석서비스"란 중개회사가 회사에게 자본시장법 제 71 조제 2 호의 조사분석자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분석 및 조언을 직·간접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로서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 4-62 조 및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 2-63 조 내지 제 2-68 조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증권의 가치, 투자의 적정성, 증권의 매수·매도의 타당성, 증권의 매수자 및 매도자에 대한 분석 및 보고서 제공
2. 증권의 발행인, 산업, 증권, 경제 요소 및 동향, 포트폴리오 전략과 수익률에 대한 분석 및 보고서 제공
3.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배분에 있어 각 증권의 구성비율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및 보고서 제공
4. 특정 산업이 증권시장에서 나타내는 수익 또는 가치변동 추이에 대한 분석 및 보고서 제공
5. 중개회사가 자체 개발한 리서치 전용 소프트웨어의 사용
6.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내용으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사항

③ 제2항 각 호의 공통적 요소인 "분석", "보고서"에는 각각 실질적인 내용 또는 합리적인 근거 및 지식표현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.
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본시장법, 같은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회사의 중개회사 선정 및 평가, 조사분석서비스에 대한 관리 및 비용처리 등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대한 회사 및 중개회사의 제반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.
② 이 규정은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의 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한다. 다만,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16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공시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③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투자자가 투자계약서, 운용지침, 통보 등에 의하여 거래 중개회사 및 배분

비율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4조(기본원칙) 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 및 배분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② 회사는 제2조제1항의 중개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조사분석서비스에 한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.
③ 회사는 조사분석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조사분석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된 편익에 비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④ 회사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(자본시장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른 '이해관계인'을 말한다)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여 중개회사 선정·배분 및 조사분석서비스의 이용대가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⑤ 회사는 집합투자기구를 위한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그 절차와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16조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

제5조(조사분석서비스 평가위원회 등) ① 회사는 제7조에 따른 중개회사선정기준 마련 및 제11조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'조사분석서비스 평가위원회'(이하 '위원회'라고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운용담당 대표로 하며 리서치업무 담당부서장이 간사를 담당한다.
③ 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당해 운용담당 대표
2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부서장
3.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부서장
4. 집합투자재산의 리서치업무 담당부서장
5. 준법감시인
6.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체결업무 담당부서장
7. 집합투자재산의 위험관리업무 담당부서장
8. 의안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지명하는 자

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이외의 직원 및 당해 부문 법률자문 변호사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⑤ 위원회는 매 분기 위원장이 정한 일시에 간사가 소집한다. 다만,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의 의결) ①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 한다.

1. 중개회사 선정에 관한 평가항목 결정
2. 중개회사 선정에 관한 평가항목 가중치 결정
3. 중개회사 평가에 따른 등급 배분비율 결정
4. 조사분석서비스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심의
5. 기타 중개회사 선정 및 조사분석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

②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

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2 장 중개회사의 선정 및 평가

제7조(중개회사 선정기준 및 평가절차) ①「내부통제기준」7.12에서 정하는 중개회사 선정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평가항목을 정한다.

1. 세미나, 기업탐방
2. 조사자료의 질
3. 정보 및 리서치 능력
4. 중개수수료
5. 주문체결 능력
6. 중개 서비스 문제해결
7. 기타 중개회사 선정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항목

② 중개회사 선정·배분에 대한 평가주기,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. 다만 평가주기는 3개월을 넘지 못한다.

③ 중개회사 평가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거래 중개회사로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2. 위원회에서 승인한 중개회사를 기준으로 하여 본 조 제 1 항의 평가항목을 각각 1 ~ 5 점으로 평가한다.
3. 평가한 항목별 점수를 항목가중치로 가중 평균하여, 합산한 점수를 상위 합산 점수 기준으로 S, A, B, C, D 등급으로 분류하여 평가한다.
4. 각 등급별 중개회사 배분비율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
④ 본 조 제3항 평가절차를 기준으로 하여 중개회사 선정·배분 평가는 해당 운용업무 담당부서, 리서치업무 담당부서, 매매업무 담당부서에서 한다. 다만,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 및 임직원을 지정해서 평가에 참가 시킬 수 있다.

⑤ 회사는 중개회사선정기준을 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

제8조(중개회사 선정 등) ① 회사는 제7조에 따른 중개회사선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중개회사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회사의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중개회사 평가 및 선정 결과가 중개회사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9조(중개회사 서비스의 점검 및 기록) 회사의 준법감시인은 중개회사가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개회사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최소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조사분석서비스의 구분·관리

제10조(조사분석서비스의 구분) ① 회사는 중개회사 등이 조사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내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.

1. 집합투자기구에 일반적으로 통용되거나 일상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조사분석서비스로서 회사를 위해 제공되는 조사분석서비스(이하 '회사를 위한 조사분석서비스'라 한다)
2.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자산배분 및 투자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유용성이 입증된 조사분석서비스로서 집합투자기구를 위해 제공되는 조사분석서비스(이하 '집합투자기구를 위한 조사분석서비스'라 한다)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위한 조사분석서비스로 보지 아니한다.

1. 회사의 홍보 및 마케팅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정보
2. 회사의 운용성과 측정에 관한 서비스
3. 재무, 회계 및 부기 등 실무 업무집행용의 컴퓨터 소프트웨어
4. 전문가 단체의 회비
5. 사무용품 등의 구입 또는 대여
6.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표되어 있는 정보
7. 국외 정치·경제 자료 등의 번역 서비스
8. 그 밖에 제 1 호부터 8 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내용으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사항

제 4 장 조사분석서비스의 평가

제11조 (조사분석서비스에 대한 평가) ① 회사는 중개회사에서 제공한 집합투자기구를 위한 조사분석서비스의 가치와 적정성을 제13조 각 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유형별로 평가하여, 최소 매 분기 단위로 집합투자기구를 위한 조사분석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율을 책정 한다.

② 집합투자기구를 위한 조사분석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판단을 결정하는 경우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판단에 가치를 부가하는 것
2. 독자적인 의견을 표시하고 이전에 발표된 것을 반복한 것이 아닐 것
3. 지적인 엄밀성을 갖고 있고 일반적이고 자명한 것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닐 것
4. 의미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자료의 분석·계산을 포함하는 것일 것
5. 조사분석자료에서 제공하는 증권 등에 관한 정보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 등의 유형에 따라 일반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연관성 및 유용성이 있을 것
6.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널리 유포된 발간물이 아닐 것

③ 조사분석서비스에 대한 평가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세미나, 기업탐방
2. 조사자료의 질
3. 정보 및 리서치 능력
4. 기타 조사분석서비스 평가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항목

④ 조사분석서비스에 대한 평가주기,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.
⑤ 조사분석서비스에 대한 평가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제 7 조에 의거하여 선정된 중개회사를 기준으로 한다.
2. 매매체결 업무 및 조사분석서비스 업무로 구분하여 평가·배분 한다.
3.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중개회사별 조사분석서비스 수수료율을 배분 한다.

⑥ 본 조 제5항 평가절차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분석서비스 평가는 해당 운용부서, 리서치부서에서 한다. 다만,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 및 임직원을 지정해서 평가에 참가 시킬 수 있다

제12조 (조사분석서비스 수수료 지급 절차 및 방법) ① 주식의 매매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매매체결업무 수수료와 조사분석서비스 수수료로 구분하여, 제11조 조사분석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중개회사별로 차등하여 적용한다.
② 조사분석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제13조 각 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서 주식의 매매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
③ 집합투자기구를 위한 조사분석서비스 수수료는 위탁하는 매매 약정금액에 각 중개회사별 조사분석서비스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④ 조사분석서비스 수수료 지급은 중개회사 매매체결 업무 수수료와 함께 지급한다.
⑤ 조사분석서비스 수수료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프로그램매매 또는 운용전략상 미리 정한 시스템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
2. 거래중개회사가 아닌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는 경우
3. ETF 를 매매하는 경우
4. 대량매매
5. 패시브(Passive)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스템 매매가 위주인 경우

제 5 장 조사분석서비스 수수료 지급

제13조 (조사분석서비스 수수료 지급대상) 집합투자기구를 위한 조사분석서비스 수수료 지급대상은 협회 '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' 별지 제15호에 따른 2차 분류(집합투자기구의 종류) 중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에 한한다.

1. 주식형 집합투자기구
2. 혼합주식형 집합투자기구, 혼합채권형 집합투자기구
3. 부동산 집합투자기구,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및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

제14조 (조사분석서비스 수수료의 지급 금지) 회사는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사를 위한 조사분석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6 장 조사분석서비스에 대한 내부통제

제15조(내부통제) ① 운용 담당 부서장은 월간, 분기 주기로 실질 배분비율과 목표 배분비율을 해당 운용담당 대표, 준법감시인, 리스크관리 부서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.
② 주관부서장(운용담당 부서장, 리서치 담당 부서장, 매매 담당 부서장)은 월별로 실질 배분비율과 목표 배분비율이 5%p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경우, 그 중개회사 거래배분 자료 및 사유를 해당 운용담당 대표, 준법감시인, 리스크관리 부서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.
③ 회사의 준법감시인은 집합투자기구를 위한 조사분석서비스 사용 대가의 지급 방법 및 절차가 이 규정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.

제 7 장 조사분석서비스의 공시 및 기록 유지

제16조(조사분석서비스 수수료율 등 공시) ① 회사는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에 수수료를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금융투자업 규정 제4-66조에 의거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양식에 맞게 기재하여야 한다.

1. 중개회사별 순수 매매체결업무를 위한 수수료율
2. 중개회사별 집합투자기구를 위한 조사분석서비스 수수료율

제17조(자료의 기록·유지)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,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하고 10년간 유지하여야 한다.

1. 제 8 조제 2 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확인한 결과
2. 제 9 조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확인한 결과
3. 제 11 조에 따른 조사분석서비스 평가 결과
4. 중개회사별 조사분석서비스 수수료 지급 내역
5. 제 15 조제 3 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확인한 결과

부 칙 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<별첨 1> 투자중개업자 선정 평가 배점

1.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

◈ 평가항목 가중치 및 평가부서

평가항목	가중치	평가부서 및 부서별 배점비중
세미나, 기업탐방	30%	리서치부서/주식운용부서(100%)
조사자료의 질	10%	리서치부서/주식운용부서(100%)
정보 및 리서치능력	30%	리서치부서/주식운용부서(100%)
중계수수료	5%	매매부서(100%)
주문체결능력	15%	매매부서(100%)
중개서비스문제해결 및 기타	10%	리서치부서/주식운용부서(100%)

◈ 등급별 중개회사 배분 비율 및 평가주기

- S 등급:9%, A등급:6%, B등급:4%, C등급:3%
- S ~ C등급 외 후보증권사는 잔여비중 수준에서 거래처로 활용할 수 있음.
- 배분 비율은 기준은 매매수수료임.
- 평가주기 : 1개월

2. 채권 및 채권관련파생상품

◈ 평가항목 가중치 및 평가부서

평가항목	가중치	평가부서 및 부서별 배점비중
시장판단 대처능력	15%	채권 운용부서(100%)
조사자료의 질	15%	채권 운용부서(100%)
세미나	20%	채권 운용부서(100%)
거래의 용이성	15%	매매부서(100%)
거래체결능력	20%	채권운용부서(70%), 매매부서(30%)
중개서비스문제해결 및 기타	15%	채권운용부서(70%), 매매부서(30%)

◈ 평가항목별 가중치 평균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 기준으로 상위 20개사를 중개회사로 선정함. 배분 비율은 거래량 기준임.(평가주기 3개월) 단, 시장상황에 맞추어 중개회사 선정 수와 평가주기를 변경해야 될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 할 수 있다.

<별첨 2> 투자중개업자 조사분석서비스 수수료 평가 배점

1. 주식

◈ 평가항목 가중치 및 평가부서

평가항목	가중치	평가부서 및 부서별 배점비중
세미나, 기업탐방	40%	리서치부서/식운용부서(100%)
조사자료의 질	10%	리서치부서/주식운용부서(100%)
정보 및 리서치능력	40%	리서치부서/주식운용부서(100%)
기타 조사분석서비스	10%	리서치부서/주식운용부서(100%)

◈ 매매체결 수수료 및 조사분석서비스 수수료 분배 비율

-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된 중개회사 중에 분기별 거래가 있는 중개회사의 매매수수료율을 평균하여, 평균 매매수수료율의 30%를 매매체결수수료율로 하고 70%를 조사분석서비스 수수료율(이하 '기본 조사분석서비스 수수료율'이라 함)로 한다. 단, 조사분석서비스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±10% 범위 내에서 가감 할 수 있다.

- 매매수수료율이 평균 매매수수료율에 미치지 못하거나 매매체결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회사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사분석서비스 수수료율을 0%로 정 할 수 있다.

◈ 조사분석서비스 수수료율

1) 분기별 거래가 있는 중개회사를 기준으로 한다.

2) 평가항목의 가중치 평균 점수를 합산하여 3개의 등급으로 나눈다.(A, B, C등급)

3) 각 등급별로 중개회사를 평가점수를 기준하여 분류한다.

- A등급 :30%, B등급:30%, C등급:40%

4) 각 등급마다 기본 조사분석서비스 수수료율에 수수료율을 가감 한다. 단, 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.

- A등급: +1Bp, B등급:0Bp, C등급:-1Bp

5) 평가주기 : 3개월